

## 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글로벌천연가스증권모투자신탁[파생결합증권-파생형]
2. 변경시행일 : 2020.11.04
3. 주요 정정사항 :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**[신탁계약서] :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**

정정 전	정정 후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생략> 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현행과 같음> ④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<u>&lt;신설&gt;</u>	<u>부칙</u>
	이 신탁계약은 202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<끝>.